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10-18

## 부 산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21고단777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이임표  
판 결 선 고 2021. 8. 25.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임의로 일본 만화를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의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 인터넷상의 E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진 'G' 만화를 임의로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에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4회에 걸쳐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H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I가 저작권을 가진 'J' 만화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9회에 걸쳐 한글로 번역, 배포 등 목적으로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역식자 E 접속 IP 확인 정보), 수사보고(역식자방 텔레그램 증거분석 보고), 수사보고[역식자 K(E) 증거분석], 수사보고(각 외장하드 증거분석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제1, 3번 SD카드 등 증거분석 보고), 수사보고(텔레그램 역식자 금융거래 정보 확인)



## 1. 불법 유포 채증자료(디지털포렌식 워터마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동종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단서 제1호(판시 제2항의 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10-18

판사 김유신 \_\_\_\_\_